

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53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년 2월 25일

발 의 자 :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 : 남진삼, 김성기, 이은미 의원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관내 주둔 군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, 군과 지역 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여 군장병을 평창군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군조직법」, 「군인사법」, 「통합방위법」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불임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6. 2. 10. ~ 2026. 2. 23.(14일간), 아래 표 참조

조례안(의회안)	검토안(안전교통과)	의회의견
<p>제명 「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」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평창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명변경 「평창군 군(軍)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(안)」</p> <p>사유 재정지출·보조금은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결되므로 법률의 근거와 범위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제1조(목적)에서 규정하듯이 단순 군 주둔 ‘군부대 장병의 사기진작과 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,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’이라는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, 군부대 장병을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생활인구나 정착인구로 유입하는 등 좀더 구체화된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</p> <p>아울러, 평창군의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확립을 위한 업무목적을 갖는 안전교통과에서 군부대 지원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음. 현재 군부대 장병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일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, 이는 지역 예비군과 민방위 등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한 조례로, 군의 재정지출 근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</p> <p>- 평창군장병 지원 조례 (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)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) 제3조(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) ... 3. 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가.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다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4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가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. <u>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</u> 따라서, 강원도 타 시군의 군민화, 시민화를 위한 조례(안)과 같이 그 목적을 분명히 하여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.</p>	<p>[검토안 반영안함]</p> <p>사유 법제처 『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』에 따르면 목적 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입법 취지나 목적이 종합적·포괄적으로 나타나도록 서술해야 한다.“ 라고 되어있습니다.</p> <p>구체화된 목적을 가지고 목적 내용을 수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본 조례안 취지와 달리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, 취지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평창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군부대”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내에 주둔하고 있는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.
2. “군장병”이란 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 및 「국군조직법」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의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민·관·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 탐방 지원사업
2. 체육 및 문화·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
3. 군장병의 교통편의 지원사업

4.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(단,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)
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
2.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
3.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

제6조(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) ①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,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「민법」 제779조에서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, 단체, 군장병을 발굴하여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,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<국군조직법>

제2조(국군의 조직) ① 국군은 육군, 해군 및 공군(이하 “각군”이라 한다)으로 조직하며,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.

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·감독 및 합동작전·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.

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·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16조(군무원)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, 임면(任免), 복무,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<군인사법>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.

1.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, 준사관(準士官), 부사관(副士官) 및 병(兵)
2. 사관생도(士官生徒),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
3.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

<통합방위법>

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시·도 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
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“취약지역”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2. 통합방위 대비책
3.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6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<통합방위법 시행령>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

① ~ ⑦ (생략)

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
<민법>

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관련 조문 : 제4조

제4조(지원사업)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통합방위작전·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
2. 체육 및 문화·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
3. 군장병의 교통편의 지원사업
4.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(단,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)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군부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됨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
연락처	(033) 330 - 2081